

논문 유사도 검사시스템 활용지침

제 정 2015.10.01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중앙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「특수대학원 학사운영에 관한 시행세칙」 제64조 제3항에 의거 본교 학위청구 논문 제출 작성 시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지침이 적용되는 연구물의 범위는 특수대학원 학사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46조(학위수여)에 따른 학위수여논문으로 한다.

제3조(논문 유사도 검사시스템 활용) ① 제2조의 대상이 되는 학생은 본교 학위수여논문을 작성함에 있어서 부정행위 방지 및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본인이 작성한 논문을 본교가 도입하여 운영하는 ‘논문 유사도 검사시스템’으로 자율 검사하여 「유사도 검사 등급」을 확인 후 논문 유사도 검사 결과보고서를 논문심사본 제출 시, 학위청구논문 결과보고서 제출 시 건설대학원 교학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.(2회 제출)

② 제①항에 따른 유사도 검사등급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.

1. 양호 수준 : 0%이상 ~ 10% 미만
2. 유의 수준 : 10%이상 ~ 15% 미만
3. 주의 수준 : 15% 이상 ~ 20% 미만
4. 위험 수준 : 20% 이상(논문 심사위원장 및 심사위원 서명된 의견서 제출)
※ 검사결과가 30% 이상일 경우, 5조 ②항에 의거하여 졸업이 연기될 수 있다

③ 논문 검사 시에 검사조건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.

1. 비교범위 : 현재첨부분서, 도메인DB, 카피킬러 DB
2. 검사설정 : 인용/출처 표시문장 제외, 목차/참고문헌 제외
3. 표절기준 : 6어절 이상 일치, 1문장 이상 일치

제4조(검사 등급에 따른 자율조치) 제3조에 따라 연구물의 유사도 검사등급을 확인한 학생은 연구윤리를 준수하기 위하여 제3조 제②항에 의한 검사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율 조치한다.

① 양호 수준 : 연구윤리에 위배되지 않는가를 면밀히 재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검사결과를 연구물에 첨부하여 활용

- ② 유의 수준 : 연구윤리에 위배될 수 있는 의심 부분을 수정하고 재검사를 수행하여 검사결과를 양호 수준으로 낮추어 활용하거나, 검사결과가 유사도 검사시스템의 기술적 한계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본인의 검토 내용을 검사결과에 기술하여 활용
- ③ 주의 수준 : 연구윤리에 위배될 수 있는 의심 부분을 수정하고 재검사를 수행하여 검사결과를 양호 수준으로 낮추어 활용하거나, 검사결과가 유사도 검사시스템의 기술적 한계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지도교수의 검토를 받아 검토내용을 검사결과에 기술하여 활용
- ④ 위험 수준 : 연구윤리에 위배될 수 있는 의심 부분을 수정하고 재검사를 수행하여 제3호 이하의 수준으로 낮추어 활용

제5조(논문 유사도 검사결과 확인) ① 제2조에 의거 학위청구논문을 작성한 대학원생이 학위청구논문의 심사를 청구할 경우에는, 반드시 제4조에 따라 자율 조치한 논문유사도 검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학위청구논문의 심사자는 이의 적정여부를 심사한다.

② 논문 유사도 검사결과가 30% 이상인 경우는 건설대학원 자문위원회를 거쳐 최종 졸업여부를 결정 한다.

제6조(기타) 기타 논문 유사도 검사 시스템의 활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건설대학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7조(적용시기) 2015학년도 하반기부터 적용 한다.

학위논문 표절을 관련 의견서

심사대상	학과/전공	_____ 학과 _____ 전공	과 정	석사
	학 번		성 명	
논문표절을		_____ %		

논문 표절을 관련 총평

※논문 유사도 검사결과가 20% 이상인 경우에만 의견서를 작성하며, 30%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대학원 자문위원회에서 최종 졸업여부를 결정한다.

년 월 일

확 인 자 : 심사위원장 (서명)

확 인 자 : 심사위원 (서명)

확 인 자 : 심사위원 (서명)